(改 正) 消 防

番號		管理者 및 消防施設 등의 種類 ＼ 別表1 消防對象物	構造別	令第4條	消 火 設 備																		
				防火管理者選任對象	令第16條 消火器具				令第17條 屋內消火栓			令第18條 스프링크라設備					令第19條 물噴霧消火設備등			令第25條 屋外消火栓	令第26條 動力消防펌프		
				收容人員 50人이상	準危險物 特殊可燃物	地層, 無窓層또는 3層이상	其他		準危特燃	地層, 無窓層또는 4層이상	其他	準危特燃	地層, 無窓層또는 4層이상 10層以下	11層以上의 部分中 防火區劃된部分以外	其他	헷드의 거리	準危	通信機器室	其他		準危特燃	地層, 無窓層또는 4層이상	其他
1	가	公演場·觀覽場	可燃構造 耐火構造	從業員數+椅子의 넘수+立席(넓이/0.2m²)+기타(넓이/0.5m²) ※長椅子: 넓이/0.4m	別表3에서 定한 數量以上의 準危險物과 別表4에서 定한 數量以上의 特殊可燃物. 別表2의 指定數量未滿 5分의 1以上의 危險物取扱.	바닥面積 50m² (15.15坪) 以上	全 部	1單位100m² 1單位 50m²	別表3에서 定한 數量 七五〇倍 以上의 (一)(二)(五)類의 準危險物 別表4에서 定한 數量 七五〇倍 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取扱하는 것.	바닥面積 100m² 이상 (300)	延面積 500m² 以上 (1,500〃)	別表3에서 定한 數量의 1、000倍 이상의 第1、2、5類의 準危險物、別表4에서 정한 數量의 1、000倍 이상의 特殊可燃物。 2·1 (2·3)	무대부 바닥면적 300M²이상	100m² 이상	무대부 바닥면적 500M²이상	무대부에 있어서는 1.7m 이하 其他의 부분에는 2.1m 이하	別表3에서 정한 數量의 1、000倍 이상의 準危險物로써 第1·2類는 물、噴霧、泡沫消火設備、第4類는 물噴霧、泡沫、不燃性개스、증발성액체 粉末消火設備、第5類는 물噴霧設備。 別表4에서 정한 數量의 1、000倍 이상의 特殊可燃物로써 石炭、또는 木炭은 물、噴霧、泡末消火設備、木炭、石炭이외의 것은 물噴霧 泡沫 不燃性개스消火設備(全域用)。	바닥面積 500平方미터 이상의 通信機器室、물噴霧、不燃性개스、粉末 消化設備		① 바닥面積(地層을 제외한 層數가 하나인 경우에는 1層의 바닥面積을、둘 이상인 경우에는 1·2層의 바닥面積合計) ㉮耐火建築物 9、000m² 이상 ㉯防火建築物 6、000m² 이상 ㉰ 其他建築物 3、000m² 이상 ② 同一垈地안에 2이상의 建築物(耐火、防火建築物除外)이 있을 때에는 建築物 相互外壁間의 中心線으로 부터 水平巨離가 1層 3m 이하、2層 5m 이하인 것은 하나의 建築物로 본다	別表3에서 定하는 數量 750倍以上의 準危險物。別表4에서 定하는 指定數量 750 倍 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取扱하는 것。	바닥面積 100m² (300以上)	연면적 500m² 以上 (1,500〃)
	나	集会場	可燃〃 耐火〃				150m² (45.45坪)以上	100〃 200〃			500〃 (1,500〃)												
2	가	카바레	可燃〃 耐火〃	(유기장) 從業員數+最大유기人員數 (기타) 從+椅子의 넘수+기타(넓이/3m²) ※長椅子: 넓이/0.5m		〃	全 部	50〃 100〃		150〃 (450)	700〃 (2,100〃)		바닥面積 1,000m 이상	〃		2.1〃 (2.3〃)						150〃 (450)	700〃 (2,100〃)
	나	遊技場·댄스홀	可燃〃 耐火〃				〃	50〃 100〃			700〃 (2,100〃)					2.1〃 (2.3〃)							
3	가	遊興飲食店	可燃〃 耐火〃		〃	〃	150m² (45.45坪)以上	100〃 200〃		150〃 (450)	700〃 (2,100〃)			〃								〃	〃
	나	飲食店	可燃〃 耐火〃					100〃 200〃			700〃 (2,100〃)		1,500〃			2.1〃 (2.3〃)							
4	○	百貨店·市場	可燃〃 耐火〃	從+넓이/4m²	〃	〃	〃	100〃 200〃		150〃 450)	700〃 (2,100〃)		1,000〃	〃	(賣場의 바닥面積 ㉮5層 이상 6千m² ㉯4層 이하 9千m²)	2.1〃 (2.3〃)						〃	〃
5	가	旅館·호텔, 旅人宿	可燃〃 耐火〃	從+숙박실大數 寝式: 침대수로計算 한식: 넓이/3m² 단체: 넓이/1.5m² (기숙사) 居住者數	〃	〃	〃	100〃 200〃		150〃 (450)	700〃 (2,100〃)		1,500〃	〃		2.1〃 (2.3〃)						〃	〃
	나	寄宿舍, 下宿, 共同住宅	可燃〃 耐火〃					100〃 200〃			700〃 (2,100〃)												
6	가	病院, 医院, 助産所	可燃〃 耐火〃	(병원) 從+病床數+휴게실/3m² (양노원) 從+수용자+보호자 (아동복지시설등) 從+수용數	〃	〃	〃	100〃 200〃		150〃 (450)	700〃 (2,100〃)		1,500〃	〃		2.1〃 (2.3〃)						〃	〃
	나	養老施設	可燃〃 耐火〃					100〃 200〃			700〃 (2,100〃)					2.1〃 (2.3〃)							
	다	兒童福祉施設 幼稚園, 盲學校, 聾學校	可燃〃 耐火〃					100〃 200〃			700〃 (2,100〃)					2.1〃 (2.3〃)							
7		學校	可燃〃 耐火〃	從+學生數	〃	〃	300m² (90.9坪)以上	200〃 400〃		150〃 (450)	700〃 (2,100〃)											〃	〃
8		圖書館, 博物館, 美術館 科學館	可燃〃 耐火〃	從+넓이/3m²	〃	〃	〃	200〃 400〃		150〃 (450)	700〃 (2,100〃)											〃	〃
9		公衆沐浴場	可燃〃 耐火〃		〃	〃	150m² (45.45坪)以上	100〃 200〃		150〃 (450)	700〃 (2,100〃)											〃	〃
10		停車場·船渠 待合室	可燃〃 耐火〃	從業員數	〃	〃	300m² (90.9坪)以上	200〃 400〃		150〃 (450)	700〃 (2,100〃)											〃	〃
11		寺刹·教會	可燃〃 耐火〃	從+넓이/3m²	〃	〃	〃	200〃 400〃		200〃 (600)	1,000 (3,000)											200〃 600〃)	1,000〃 (3,000〃)
12	가	工場	可燃〃 耐火〃	從業員數	〃	〃	150m² (45.45坪)以上	100〃 200〃		150〃 (450)	700〃 (2,100〃)			〃								150〃 (450〃)	700〃 (2,100〃)
	나	映画 및 테레비撮影所	可燃〃 耐火〃				〃	100〃 200〃			700〃 (2,100〃)												
13	가	車庫 駐車場	可燃〃 耐火〃	〃	〃	〃	〃	100〃 200〃											㉮ 地層 또는 2層 이상바닥 200m² ㉯ 1層 500m²				
	나	飛行機格納庫	可燃〃 耐火〃					100〃 200〃															
14		倉庫	可燃〃 耐火〃	〃	〃	〃	〃	100〃 [illegible]		150〃 (450)	700〃 (2,100〃)				천정높이 10m以上 연면적 700m² 以上의 라크식창고	內務部令으로 定함.						150〃 (450〃)	〃
15		事業場	可燃〃 耐火〃	從+넓이/3m²	〃	〃	300m² (90.9坪)	[illegible] 400〃		200〃 (600)	1,000〃 (3,000〃)			〃								200〃 (600〃)	1,000〃 (3,000〃)
16		複合建物等	可燃〃 耐火〃		〃	〃																	
17		重要文化財	可燃〃 耐火〃	延面積/5m²	〃	〃	全 部	50〃 100〃															
18		아케이트	可燃〃 耐火〃		〃	〃	全 部																
19		山林	可燃〃 耐火〃		〃	〃																	
20		舟車	可燃 耐火〃		〃	〃	全 部																
備考		① 消防施設 設置適用의 通則 가. 消防対象物이 耐火構造로서 開口部가 없는 바닥 또는 壁으로 区劃되어 있을 경우 그 区劃된 部分은 각각 別個의 消防対象物로 본다. 나. (16)項에 해당하는 消防対象物의 部分이 (1)項내지 (15)項에 해당하는 消防対象物의 用途에 사용되는 것은 그 用途로 사용되는 1의 消防対象物로 본다.|(令第14條·第15條)	"耐火構造"라함은 鐵筋콩크리트造, 其他 이와 類似한 構造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한 耐火性能을 가진것을 말한다 (建築法第2條9)	① 收容人員의 算定方法은 規則第2條 定한바에 依한다. ② 同一垈地안에 2이상의 特殊場所가 있는 경우에는 그 管理에 관한 權限을 가진 者가 同一人인때에는 이를 1의 特殊場所로 본다.	① 消防器具의 適応은 分別表5 消防器具別 適応 対象物. ② 屋内消火栓, 스프링크라, 물噴霧, 泡沫, 不燃性개스, 蒸発性液体 또는 粉末消火設備를 한 때에는 設置個數減少|(基準의¾까지…規則第14條) ③ 蒸発性液体를 발사하는 消火器는 地層 無窓層에 設置못함.|(規則第17條-居住·事務室등으로서 바닥面積 20m²以下)				① 消防対象物의 層마다 設置하되 層의 各部分으로 부터의 호스接續口 까지의 水平距離는 25m를 超過할 수 없다 ② 水源의 水量은 設置個數가 가장 많은 層의 設置個數(5個를 超過할 경우에는 5로 한다.)에 2.6m³ 승한량 이상. ③ 어느 層에 있어서도 모든 屋内消火栓(5를 超過할 때는 5로 한)을 同時에 使用 하였을 경우 各 노즐 先端放水 压力이 1.7kg/cm² 이고 放水量이 每分 130ℓ 以上의 性能 ④ 스프링크라, 물, 噴霧, 泡沫, 不燃性개스, 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를 한 때 (屋外消火栓, 動力消防펌프 設備는 1, 2層의 部分은 限한다) 그 [illegible]안의 部分은 제외.			① 延焼의 우려가 있는 部分의 開口部에는 그 윗 입방에 당해 윗입방의 길이 2.5m마다 스프링크라헷드를 設置할 것 (다만 甲種, 乙種 防火門 또는 内務部令으로 정하는 도렌자 設備를 한때는 제외) ② 물, 噴霧, 泡沫, 不燃性개스, 消火設備를 設置한 有効範囲안의 部分은 제외 ③ 地層, 無窓層 또는 4層이상의 層으로 内務部令으로 정하는 部分제외. ④ 헷드 設置간격은 耐火建築物에 있어서는 2.3m 이하. ⑤ 水源의 水量은 스프링크라헷드[illegible]에 따라 部令으로 定하는 個數×[illegible]m³ 一얻은量 以上. ⑥ 部令으로 定하는 個數를 同時 使用할 경우 各헷드 先端 放水圧力 1kg/cm²以上 放水量 80ℓ 以上 의性能. ⑦ 11層 이상에는 非常電源을 附設하고 双口形의 送水口를 設置할 것.				消防設備 ＼ 対象物: 물분무 / 泡沫 / 不燃가스 / 粉末 / 증발액체 別表1 (13): ○ ○ ○ ○ 〃 나: ○ (泡沫) 通信기기실: ○ (물분무), ○ ○ (不燃가스, 粉末) 準危 1및2類: ○ ○ 準危 4類: ○ ○ ○ ○ ○ 準危 5類: ○ 特燃 석탄또는목탄: ○ ○ 特燃 其他: ○ ○ ○ 特殊 可燃物에 不燃가스 설비를 할 때에는全域방출 방식의 것에 한함.			① 屋内消火栓의 設置対象物. (屋外消火栓, 屋内 消火栓(1층 2층)스프링크라, 물, 噴霧, 泡沫, 不燃性, 가스, 消火設備를 한 경우는 除外) ② 屋外消火栓의 設置対象物(스프링크라, 물, 噴霧, 泡沫, 不燃性가스 蒸発性液体, 粉末, 消火設備를 한 경우 除外) ③ 水源의 水量은 規格 放水量(0.4m³/分 以上으로 20分間의 放水量. ※ 20m³초과시는 20m³까지로 할 수 있다.		

註) 令第25條 備考 建築物의 各部分에서 하나의 호스 接續口 까지의 水平 距離가 40m이하가 되도록 設置 ② 水源의 水量은 設置個數(2以上일때는2)×7m³으로 얻은 量以上 ③ 스프링크라, 물 噴霧, 泡沫, 不燃性개스 蒸発性液体, 粉末動力消防펌프 設備를 한 경우에는 그 有効範囲 안의

註)令第33條 備考 ①有効水量은 地面下4.5m이내 ② 流水의 경우에는 每分 0.8m³의 流量을 20m³ 水量으로 換算 ③ 1個의 消火用水의 有効數量은 20m³ 이상. ④ 消防用水는 2m이내의 地點까지 消防펌프 自動車가 接近할 수 있도록 設置 ⑤ 消火水槽에는 適當 한 크기의 吸管投入孔을 設置

施設早見表

警報設備												避難設備				
令第27條			令第28條		令第29條			令第30條				令第31條	令第32條			
自動火災探知設備			電氣火災警報器		消防署에通報하는 火災 速報 設備			非常警報設備				避難器具	誘導燈誘導標識			
準危特燃	地階, 無窓階 또는 3階 이상	其他		契約電流容量		自動速報	準危特燃	非常警報器具	비상벨自動式 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放送設備및 비상벨 또는 自動싸이렌		避難器具	피난구 유도등	通路 유도등	客席 유도등	誘導標識
別表2에서 정한 數量 500倍 이상의 準危險物 別表3에서 정한 數量의 500倍 이상의 特殊可燃物을 貯藏하거나 取扱하는 것。	바닥面積 300平方미터 이상의 것(600平方미터)	延面積 300㎡ 以上(600〃) 300〃 (600〃)	延面積 300㎡ 이상	암페아 100 以上	延面積 500㎡以上(1,000〃) 500〃 (1,000〃)		別表3에서 定하는 指定數量 千倍 以上의 準危險物, 別表4에서 定하는 指定數量 千倍 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取扱하는 것。		收容人員 50人以上 地階無窓階으로 收容人員 20人以上	收容人員 800人以上		2階以上의 階(耐火構造除外) 地階으로 收容人員50人以上.	全部	全部	全部	全部
		300〃 (600〃) 300〃 (600〃)	〃	〃	500〃 (1,000〃) 500〃 (1,000〃)				〃	〃		〃	〃	〃		
		500〃 (1,000〃) 500〃 (1,000〃)	〃	〃	1,000〃 (2,000〃) 1,000〃 (2,000〃)				〃	〃		〃	〃	〃		
		500〃 (1,000〃)	〃	〃	500〃 (1,000〃)	바닥면적 1,500㎡ 이상		20人以上 50人	〃	〃		〃	〃	〃		
		300〃 (600〃) 500 (1,000〃)	150〃	〃	500〃 (1,000〃) 1,000〃 (2,000〃)				수용인원 20人이상 1항과同	300人 以上 800人 以上		30人以上 (10人)	〃 地無窓階 11階以上의 部分	〃 地無窓階 11階以上의 部分		
		300〃 (600〃) 300〃 (600〃) 300〃 (600〃)	300〃	〃	500〃 (1,000〃) 500〃 (1,000〃) 500〃 (1,000〃)			〃 〃	수용인원 20人이상 1항과同	300人 以上 〃		20人以上 (10人)	全部	全部		
		500〃 (1,000〃) 500〃 (2,000〃)	500〃		1,000〃 (2,000〃) 1,000〃 (2,000〃)				〃 〃	800人 以上 〃		50人以上 〃	5項나와 同 〃	5項나와 同 〃		
		500〃 (1,000〃)	150〃		1,000〃 (2,000〃)			〃	수용인원 20人이상			〃	全部	全部		
		500〃 (1,000〃)	500〃		1,000〃 (2,000〃)				1항과同			〃	5項나와 同	5項나와 同		
		1,000〃 (2,000〃)	〃		1,000〃 (2,000〃)				〃			〃	〃	〃		
		500〃 (1,000〃) 500〃 (1,000〃) 500〃 (1,000〃)	300〃		500〃 (1,000〃) 500〃 (1,000〃) 1,000〃 (2,000〃)	〃 〃		〃 〃	〃 〃	〃		3階以上의階, 또는 地階으로 收容人員 100人其他階은 150人以上	〃	〃		
		全部			1,000〃 (2,000〃)				〃				〃	〃		
		500〃 (1,000〃)	1,000〃		1,000〃 (2,000〃)	〃			〃				〃	〃		
		1,000〃 (2,000〃)	〃	〃	1,000〃 (2,000〃)				〃			〃	〃	〃		
									〃							
									〃							
		全部	全部		500〃 (1,000〃)				〃							
① 1回線의 有效警戒区域은 消防対象物의 2이상의 層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1回線의 警戒区域은 600㎡(1辺의 길이는 50m) 이하 단 内部를 透視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0㎡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스프링크라, 물噴霧, 泡沫, 不燃性개스, 蒸発性液体, 粉末消火設備를 設置한 때에는 그 有效範囲안의 部分에 限하여 제외. ④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로된 建築物에는 반자안의部分에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自動火災 探知設備에는 非常 電源을 附設하여야 한다.			① 壁, 바닥 반자 중 그 어느 하나 만이라도 不燃材料, 準不燃材料 이외의 材料로써 鉄網을 넣어 만든 것에는 設置하여야 한다.		① 消防官署 로부터 500m안에 있는 消防対象物 제외. ② 電話를 設置한 対象物 제외. ③ 준위험물 1.2. 5류 만적용			① 自動火災探知 設備와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放送設備의 有効範囲内에는 非常벨 또는 自動式 싸이렌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의 것에는 방송설비 및 비상벨이나 자동식 싸이렌 및 방송설비 설치.				① 収容人員 20人～30人─100名 50人～ ─200名 100人～150人─300名을 超過한 때마다 1個式을 加算한 個数를 設置. ② 建築法 施行令 第104조의 規定에 依한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 제외. ③ 別表1. 6항 (20人이상) 5항 (30人이상)의 소방 対象物의 下층에 同表 1항～4항 9항 12항 "가" 13항 "가" 14～15항의 소방 대상물에는 10人이상으로 한다.	① 通路誘導灯은 昼間에만 사용하는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 으로써 採光이 避難上 充分한 것은 제외. ② 避難口誘導灯은 緑色의 灯으로 避難口의 上部의 設置. ③ 通路誘導灯은 複道, 계단 通路 기타 避難設備가 있는 場所에 設置. ④ 客席誘導灯은 그 照明度가 0.2룩스 이상이 되도록 設置. ⑤ 誘導灯 標識은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場所에 設置. ⑥ 誘導灯을 11階 이상의 層의 部分에 設置한 때에는 非常電源을 附設할 것.			

消火用水	消火活動上 必要한 施設				防炎處理
令第33條	令第34條	令第35條	令第36條	令第37條	法第11條(令第9條)
消火用水	排煙設備	連結送水管設備	連結撒水設備	非常콘센트設備	防炎區分 處理對象
全部	①②③ 1 이상이 될 때에는 하나의 建築物로 본다。 2 層에 있어서는 5m 이하의 것은 그 各層의 바닥面積을 耐火建築物은 15,000㎡ 準耐火建築物에 있어서는 1,000㎡로 其他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5,000㎡로 나누어 얻은 數의 合計가 3m 이하 同一垈地안에 둘 이상의 建築物(높이 31m 이상이고 또한 延面積(地階을 제외)이 25,000㎡ 이상의 것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의 相互外壁間의 中心線에서 水平距離가 1層에 있어서는 높이가 31m 이상이고 또한 그 延面積(地階을 제외)이 25,000㎡ 이상의 것 垈地面積이 20,000㎡ 이상이고 또한 그 바닥面積이 耐火建築物에 있어서는 15,000㎡ 이상 難燃性建築物은 10,000㎡ 이상 기타 建築物은 5,000㎡ 이상。	舞台바닥面積 200㎡ 이상 地階 또는 無窓階, 바닥面積 1,000㎡ 이상 2項과同 2항과同 地階 또는 無窓階 바닥面積 1,000㎡ 이상	①② 地階을 제외한 階數가 7 이상의 것。 地階을 제외한 階數가 5 이상의 것으로서 延面積이 6,000㎡ 이상의 것。 全部	① 地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七百平方미터 以上의 것。	地層을 제외한 11層 이상의 것。	劇場 全部 其他高層建物 카바레, 나이트크럽全部 댄스홀 全部 其他高層建物 高層建物 〃 全部 호텔 全部 其他高層建物 共同住宅全部 其他高層建物 病院 全部 其他高層建物 高層建物 〃 全部 도서관 全部 其他高層建物 高層建物 〃 〃 全部 高層建物 〃 〃 〃 〃
① 有効水量은 地面 4.5m이내 ② 流水의 경우에는 毎分 0.8㎥의 流量을 20㎥水量으로 換算. ③ 1個의 消火用水의 有効 数量은 20㎥ 이상 ④ 消防用水는 2m 이내의 地点까지 消防펌프 自動車가 接近할 수 있도록 設置 ⑤ 消火水槽에는 適当한 크기의 吸管投入口를 設置 ⑥ 水量의 算出方法 第54条第1項第1号 해당 場所는 그 바닥 面積을 2号 해당場所는 그 延面積을 다음 区分의 面積으로 나누어 얻은 数(1未満은 받아 올림)에 20㎥를 곱한 量이상으로 設置 第1項 第 耐火建築物 7,500㎡ 1号해당 難燃性 5,000㎡ 建築物 기타의 2,500 第1項第2号에 해당 建築物 2,500	① 排煙上 有効한 窓 기타의 開口部가 있을 때에는 内務部令 第 条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手動 起動装置 또는 自動 起動装置를 할것 것. ③ 風道는 不燃材料로 만들 것. ④ 非常電源을 附設할 것.	① 放水口는 建築物의 3層 이상의 各層의 各部分으로부터 하나의 放水口까지의 水平距離가 50m 이내(아케이드는 25m 이내) ② 主管의 内径은 100mm 이상. ③ 送水口는 双口形으로 하고 消防펌프 自動車가 쉽게 接近할 수 있는 곳에 設置. ④ 11層 이상에 設置하는 放水口는 双口形 및 内務部令으로 정하는 加圧送水装置와 放水用器具를 格納할 函을 附設할것.	送水口를 附設한 스프링크라 設備를 第18条의 基準에 따라 設置 하였을 때에는 그 有効範囲 部分에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11層 이상의 各層에 그 層의 各部分으로부터 하나의 非常콘센트 까지의 水平距離가 50m 이하가 되도록 設置. ② 階段室 등 消火活動에 有利한 位置에 設置 ○3相交流 200V, 30A이상 및 単相交流 100V, 15A 이상 電気를 供給할 수 있도록 設置. ④ 非常電源 附設.	① 消防法 第10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高層建物 (높이 15m 以上) ② 防炎対象物品을 가텐, 暗幕 遮光幕심유판(식물섬유를 主原料로 한것에 限한다.)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用 合板을 말한다. ③ 室内装飾物 : 카페트, 天井또는 壁에 使用하는 布地, 装飾用覆金, 테이프(規則第7條) ④ 防炎性能 : 시험 基準(規則第8條・第9條)

部分에 限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2個以上을 同時使用할 경우(先端의 放水圧力 2.5kg/㎠以上 放水量 350ℓ/分)

⑥ 水量의 算出方法 第54條 第1項第1號 해당 場所는 그 바닥 面積을 2號 해당場所는 그 延面積을 다음 区分의 面積으로 나누어 얻은數 (1末満은 받아 올림)에 20㎥를 곱한 量으로 設置 第1項 耐火建築物 7,500㎡ 1號해당 難燃性建築物 5,000㎡ 建築物 기타의建築物 2,500㎡ 第1項 第2號에 해당 建築物 2,500㎡